

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

2021. 9.

산 립 청
(산불방지과)

1. 개정이유

산림인접지에서의 인화물질의 사전제거를 위한 불놓기 허가를 대통령령에서 삭제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논·밭두렁 불놓기 허가 신청 단서 조항 삭제(안 제28조 제3항)

- 논·밭두렁 등에 대한 불놓기 허가 신청서는 마을단위로 제출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의견조회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

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3항의 단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(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) ① ~ ② (생략) ③ ----- 제출하 여야 한다. <u>다만 논·밭두렁 등에</u> <u>대한 불농기 허가 신청서는 마을</u> <u>단위로 제출하여야 한다.</u>	제28조(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제출하 여야 한다. <삭 제>